

'98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것

▼ 금융·세제

분 야	현 행	달라지는 내용
할당관세 품목조정	○7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	○53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-기존할당관세 적용품목중 핫코일, 슬랩, 호밀 등을 제외한 51개품목 연장적용 -니켈괴, 이산화티타늄등 2개 품목신규적용
무역신용	○연지급수입, 분할 지급수입:품목, 기간제한 ○수출선수금 영수한도 : 전년수출실적의 100% ○대응수출이행기간 : 180일 ○소유권이전부 물품입차 : 한국은행허가 ○국내수입자는 국내은행에만 LG개설	○품목, 기간제한 폐지 ○한국은행 신고 ○외국금융기관에도 LG개설
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	○상장증권, 상장채권	○비상장주식, 비상장채권에도 투자
은행에 대한 적기시정 조치 제도 변경	○BIS자기자본비율 -6~8% : 경영개선권고 -2~6% : 경영개선조치 요구 -2%미만 또는 부실금융기관 : 경영개선 조치 명령	○BIS자기자본비율에 따른 3단계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 -4%미만시는 4%달성시까지 재산·채무의 분기별 평가 의무화 ○경영실태 평가결과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 명료화 -종합평가가 4등급이하 : 경영개선조치 요구
기업공개주식 배정비율조정	○우리사주조합 : 20% ○증권저축자등 : 40% ○기관투자가등 : 40%	○우리사주조합 : 20% ○증권저축자등 : 20% ○기관투자가등 : 60%

▼ 산업·무역

분 야	현 행	달라지는 내용
KS표시제도	○정부허가제 -허가기관 : 국립기술품질원	○민간기관인증제(민간이양)
난방유 신규공급	<신설>	○난방유 수급 안정을 위해 등유규격 이원화 -실내등유 -보일러등유

▼ 보건복지

분 야	현 행	달라지는 내용
생활보호대상자 범위확대	○가구내 근로능력자가 있을 경우 거택보호대상자로 선정되기가 어려웠음 ○65세이상 생활이 어려운 자 (생활보호대상자)에 대하여 매월 3만5천~5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	○노인, 아동, 장애인 등의 부양·양육과 간병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자는 근로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거택보호대상자로 보호 ○노령수당제도를 폐지하고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98년 7월1일 현재 65세이상의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경로연금 지급

▼ 정보통신

분 야	현 행	달라지는 내용
통신사업 진입제한	○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하여 동일인 지분을 유선10%, 무선 33%로 제한 ○외국인 등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98년말까지 별정 통신사업 진입금지	○기간통신사업 동일인 지분제한 폐지 ○외국인의 별정통신사업 진입허용(49%)

▼ 환경

분 야	현 행	달라지는 내용
환경개선부담금제도	○운송사업용 자동차부담금의 기준 부과액 : 8,100원 ○국가, 지방자치단체소유 사회복지시설 등의 부담금 50% 경감 ○공유시설인 경우 1인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160㎡미만 시설물 면제	○98년부터 기준부과금액이 12,150원으로 인상 ○98년부터 전액부과 ○공동소유의 경우 전체면적이 160㎡미만인 경우만 면제
청정연료 및 저황연료유 공급 확대	<신설>	○광주, 울산, 대전광역시, 양산, 진해, 마산, 창원, 여천, 광양, 여수, 청주, 평택, 오산, 용인시 소재 0.5t이상 업무용 보일러 및 25평이상의 중앙집중 난방식의 공동주택에는 청정연료 또는 경유를 사용하여야 함

▼ 노동·고용

분 야	현 행	달라지는 내용
임금채권 보장제도시행	<신설>	○사업대상 :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 -도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하고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
근로자파견법 제정·시행	<신설>	○컴퓨터 프로그래머, 도안사 등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3개월에서 최장2년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○일정한 자본과 시설을 갖춘자는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체에 파견하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할 수 있음
실업급여 지급 대상 확대	○실업급여 수급자격 -30인이상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중 비자발적 이직자	○실업급여 수급자격 -10인이상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중 비자발적 이직자
고용안정·능력개발사업 수혜범위 확대	○고용안정·능력 개발사업 수혜대상 50인이상 사업장	○수혜대상을 5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
수요자 중심으로 실업자 재취직 훈련절차 개선	○직업훈련비용기준의 표준훈련비를 기준으로하여 지방노동관 서장이 결정 ○국가기술자격취득 또는 조기취업시 당해 근로자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수강료의 50%를 지급	○훈련비용단가제도 도입하여 조건표에 따라 일괄지급 ○자격취득자 또는 취업인원이 수료인원의 50%를 초과할 경우 훈련비용의 10%를 취업촉진수당으로 지급

▼ 주택·건설

분 야	현 행	달라지는 내용
외국인의 토지 취득제한 철폐	○거주목적·실수요 토지취득만 허용(허가제)	○국내거주여부 용도 면적에 관계없이 토지취득을 허용(신고제)
조합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완화	○18평이하 : 20%, 25.7평이하 : 80%	○25.7평이하 : 100%
신규주택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지원	<신설>	○주택규모에 따라 2천만~4천만원 대출
중형임대주택 건설자금지원	<신설>	○25.7평이하 : 2천5백만원~3천5백만원 대출
재개발사업에 대한 기금지원	<신설>	○호당 2천만원 대출
부도사업장인수 촉진자금 지원	<신설>	○호당 8백만원 대출
임대중도금 대출상환기간 연장	○준공후 3월내 상환	○6개월단위로 기한연장
재당첨 제한기간 완화	○국민주택 : 10년, 민영주택 : 5년	○국민주택 : 5년 ○민영주택 : 분양가자율화지역-폐지, 비자율화지역-2년
주택분양 1순위 자격완화	○기당첨자, 중대형1주택 소유자, 2주택소유자는 민영주택 1순위에서 제외	○기당첨자, 중대형1주택 소유자는 1순위에 포함
주택분양 2순위 자격완화	○가입후 1년경과후에 2순위 자격부여	○가입후 6월 경과후에 2순위 자격부여
수도권전입자 청약제한 폐지	○수도권 전입자는 2년동안 청약제한	○청약제한 폐지

▼ 내무 지방행정

분 야	현 행	달라지는 내용
선급금지급제도 개선	○낙찰률 85% 미만의 공사·물품제조·용역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함	○낙찰률 85%미만 공사·물품제조·용역의 경우에도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
외국인투자촉진 공유재산대부 및 매각제도 개선	○공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정부지로 대부·매각하는 경우 -수의계약 대부·매각대감면 영구시설물 축소 불가 -대부기간 5년 이내(갱신가능) -대부매각기금 납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	○공유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 용지로 대부·매각하는 경우 -수의계약, 대부·매각대감면 및 영구시설물 축소허용 -대부기간20년 이내(갱신가능) -대부·매각대금 납부기간을 공장 최초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유예